

##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7
----------	-----

제출년월일 : 1998. 9.  
제출자 : 안산시장

### □ 개정이유

-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며 성실납세자는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실 납세자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표창(국세 → 장관표창, 지방세 → 시장)을 받은 납세자는 자랑스런 모범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이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함
- 따라서 성실 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배부하여 이 증·부착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제공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 되도록 하기위함

### □ 주요골자

- 국세청장(장관 이상) 또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 납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규정 신설(별표1의 제7호) 제1항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98. 8. 4 - 8. 24일(이의 제기 없음)

기타 참고사항

국세청 공문 사본 : 별첨

- 성실납세자의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혜택부여 협조요청 : 국세청 지도 46103 ~ 291  
('98. 2. 5)

경기도 공문 사본 : 별첨

- 성실 납세자의 공영주차장 이용 : 교기 12290 - 2779 ('98. 2. 20)

안산세무서 협조공문 사본 : 별첨

- 성실납세자의 공용주차장 무료이용에 관한 업무 협조요청 : 총무 12990 - 708  
('98. 4. 28)

##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7호내지 제10호를 제8호 내지 제11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모범 납세자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장관 이상) 또는 안산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스티커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공영주차장 요금 표 (제3조 관련)

급지구분	I회 주차요금 (1구획당 30분마다)	1일 주차요금	월정기 주차요금
1 급지	500원	5,000원	70,000원
2 급지	300원	3,000원	50,000원
3 급지	300원	2,000원	30,000원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 나. 2급지 : 제24주차장, 제25주차장, 반월, 대부, 안산동소재 주차장
  - 다. 3급지 : 환승(역세권 - 안산역, 공단역, 고잔역, 중앙역, 한대앞역, 상록수역) 주차장, 다만, 기타 환승(역세권)주차장은 시장이 지정.
3. 주차요금은 안산시 특성 및 차종에 따라 정하되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4. 자가용10부제 운행참여 스티카부착 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 페센트를 할인하여 부과한다
5.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승용자동차(800씨씨미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인(장애인동승)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상이자(상이자동승)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 시책업무 추진목적으로 시장이 발행하는 주차권을 이용하는자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40분(500원)을 주차할 수 있다 다만, 40분이후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  1 ~ 6(생략)  <u>(신설)</u>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  1 ~ 6 (현행과 같음)  7. 모범 납세자의 표창을 받은자로서 국 세청장(장관 이상) 또는 안산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스티커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7 ~ 10(생략)	8 ~ 11(현행 제7호 내지 제10호와 같음)